

2022년도 제2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I. 제 안 경 위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7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II. 제 안 사 유

- 정부 2차 추경에 대한 매칭 시비확보 및 결산에 따른 정리추경 등을 위해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III. 추가경정예산(안)

1. 총 괄

가.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165,614	198,944	△33,330	△16.8%
일 반 회 계		74,489	96,119	△21,630	△22.5%
특 별 회 계	소 계	91,125	102,825	△11,700	△11.4%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825	3,825	-	-
	도시개발특별회계	87,300	99,000	△11,700	△11.8%

나.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1,434,764	1,381,779	52,985	3.8%
일 반 회 계		642,748	642,816	△68	△0.01%
특 별 회 계	소 계	792,016	738,963	53,053	7.2%
	교통사업특별회계	39,641	38,296	1,345	3.5%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825	3,825	-	-
	도시개발특별회계	748,550	696,842	51,708	7.4%

2. 회계별 사업내역

가.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예 산 과 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사유
장	관	항	목				
총 계				39,610	61,240	△21,630	
세외수입	경상적세 외수입	재산임대 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34,159	43,834	△9,675	'22년 상반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추정액 감추경
세외수입	임시적세 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5,451	17,406	△11,955	맨홀정비 목표치 감소 (8,646개→2,500개)에 따른 감추경

(2) 교통사업특별회계 : 해당없음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해당없음

(4) 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백만원)

예산과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사유
장	관	항	목				
총 계				87,300	99,000	△11,700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자치단체 간부담금	자치단체 간부담금	300	-	300	서부간선도로 주변 정비 사업 관련 금천구 분담금 편성
지방채	국내 차입금	지방채 증권	모집공채	87,000	99,000	△12,000	양재대로 구조개선 세출 지방채 감액에 따른 세입 지방채 감추경

나. 세출예산

(1) 일반회계

사 업 내 역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1,082	1,150	△68		
계속사업	도시 재난회복력 구축 및 강화	-	160	△16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및 신종감염병 재개 등으로 인한 해외 주요도시 참여저조 우려로 인한 감추경	p.1173
신규사업	국고보조금반납(안전지원 과)	8	0	8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사업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
계속사업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출입구 사용료	352	318	34	'22년도 예산편성 시 '21.6~7월 물가상승률 잠정기준(1.8%)으로 편성되었으나, '21.12.31.통계청 최종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년 대비 2.5%상승하여 예산부족분 발생(34,227천원)	p.1178
계속사업	운행제한차량 단속	721	671	50	예산편성 시 반영된 유가 대비 현재 유가 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인상분 반영	p.1279

(2) 교통사업특별회계

사 업 내 역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30,529	29,184	1,345		
계속사업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입체화(교통개선분담금 계정)	28,729	24,184	4,545	공사 준공을 위한 시설물 관리부서 요구사항 반영 등	p.1244
계속사업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교통개선분담금 계정)	1,800	5,000	△3,200	설계 및 공사 일정을 감안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외 예산 감추경	p.1249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해당없음

(4) 도시개발특별회계

사 업 내 역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343,039	291,330	51,708		
계속사업	도시고속도로 연결로 추가설치	6,300	2,000	4,300	하반기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건축철거 공사비 등 공사비 및 감리비 추가 편성	p.1182
신규사업	서북-도심 연결 도로 네트워크 개선 기본구상	150	-	150	진행중인 민자사업(은평새길, 이수과천) 연계 노선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검토용역비 편성	p.1187
계속사업	한강상 교량 연결로 구조개선(올림픽대교 남단)	15,596	10,616	4,980	공사 준공을 위한 시설물 관리기관의 요청사항과 물가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공사비 증액 발생	p.1192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계속사업	월드컵	대교	건설	47,263	75,263	△28,000				수해예방기간(5.15.~10.15.) 하천내 공사 제한으로 공사가능일수 부족으로 시공물량 감소		p.1197
계속사업	울곡로(창경궁앞)	구조개선		14,680	14,023	657				2022년 공사 준공 및 사업 완료를 위한 잔여 사업비 필요		p.1201
계속사업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2,500	11,492	△8,992				안양천 하천협의 지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준공 연기로 공사 착공 지연에 따른 '22년 공사분(선금금)을 제외한 공사비와 감리비 감액		p.1206
계속사업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			8,624	5,124	3,500				하반기 본선 평탄화 작업 및 수로BOX 공사를 위한 추가예산 필요		p.1210
계속사업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61,531	35,578	25,953				'25년 완료를 목표로 '22년 계획된 주요 공종인 가시설공사 및 연속교 통류 우회, 선유고가 철거 후 교차로 정비 등을 위해 추경예산 확보 등		p.1215
계속사업	천호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			2,000	1,000	1,000				천호IC 내 올림픽대로 진출입 연결로 설치 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 편성		p.1220
계속사업	양재대로 구조개선			10,000	22,000	△12,000				각종 지장물(전력구, 상수도, 통신 등) 이설공사 지연에 따른 후속공정 지연으로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공사비 감액		p.1224
계속사업	서울시 내외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요 간선도로 종합검토			500	300	200				서울시 내외 각종 개발사업 관련 현안에 대한 분석대상사업 추가(3건)		p.1228
계속사업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			73,308	13,308	60,000				'22년 자치구 추진사업(區 확보예산)에 대한 시 보조금 확보		p.1232
계속사업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손실 보상			7,020	5,020	2,000				토지보상 및 판결금 지급 소요액 20억원 추가 필요		p.1236
계속사업	천호대교 남단 하부도로 구조개선 타당성조사			149	200	△51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금 외 잔여 사업비 감추경		p.1240
계속사업	노후 포장도로 정비			79,394	77,044	2,350				포장정비 주재료인 아스팔트 콘크리트 단가가 연초대비 36% 상승		p.1254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신 규 사 업	홍지문-정릉터널 비탈면 안전시설 설치	1,200	-	1,200	비탈면이 높고 점검, 작업공간이 좁고 안전장치가 없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p.1258
계 속 사 업	도로시설물 노후 조명시설 개선	4,990	4,079	911	노후된 가로등주에서 균열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시민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빠른 교체 필요		p.1262
계 속 사 업	도로터널 노후 방재시설 개량	3,665	2,665	1,000	2022년 풍수해 안전대책및 태풍 등에 대비하여 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		p.1267
계 속 사 업	성산대교 성능개선	2,858	9,858	△7,000	가교배제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재설계 등으로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 공사비 감액		p.1271
계 속 사 업	영등포역고가 보수공사	1,310	1,760	△450	공사 준공(장기계속공사-3차)에 따른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감추경		p.1276

IV. 검토의견

1. 개 요

1) 일반회계

가) 세 입 : 기정예산 대비 22.5% 감소한 744억 89백만원

나) 세 출 : 기정예산 대비 0.01% 감소한 6,427억 48백만원

2) 교통사업특별회계

가) 세 입 : 기정예산과 동일

나) 세 출 : 기정예산 대비 3.5% 증가한 396억 41백만원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가) 세 입 : 기정예산과 동일

나) 세 출 : 기정예산과 동일

4) 도시개발특별회계

가) 세 입 : 기정예산 대비 11.8% 감소한 873억원

나) 세 출 : 기정예산 대비 7.4% 증가한 7,485억 5천만원

-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위한 마중물 투자를 확대하고, 코로나 일상회복과 물가상승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적기 대응을 위해 금회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서울시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5조 8,132억원 대비 13.9%(6조 3,709억원) 증가한 52조 1,841억원 규모로
- 추정재원은 202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5조 3,753억원), 국고보조금(3,194억원), 세외수입(925억원), 지방교부세(479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7,377억원) 등이며,

- 이번 추경예산(안)의 중점 추진분야는 ‘안심·안전(4,011억원)’, ‘도시경쟁력 제고(3,834억원)’, ‘일상회복 가속화(9,262억원)’임.
- 이 중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4개 사업에 333억원(1개 사업 3억원 증, 3개 사업 336억원 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26개 사업에 530억원(18개 사업 1,128억원 증, 8개 사업 598억원 감)을 증액편성하였음.
- 안전총괄실 소관 세출예산은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사업 등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건설사업들과 그 밖에 안전기반강화를 위한 시설물 정비사업들에 추경편성되었으며, 이는 시가 밝힌 추경목적 중 ‘도시경쟁력 제고’분야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분야별 검토 의견

가. 세입 예산안

(1) 일반회계

○ 2022년도 제2회 안전총괄실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612억 4천만원 대비 216억 3천만원이 감소한 396억 1천만원을 편성했는데,

[표] 추경예산안 사업목록(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사유
장	관	항	목				
총 계				39,610	61,240	△21,630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 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34,159	43,834	△9,675	'22년 상반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추정액 감추경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5,451	17,406	△11,955	맨홀정비 목표치 감소(8,646개→2,500개)에 따른 감추경

○ 이는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지하도상가) 임대료 수입¹⁾’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당해연도 상반기 6개월분 임대료의 50% 감면추정액 등을 반영함에 따른 것임.

1) 공유재산 임대료+ 광고·부대수입

- 임대료 부과기준

- 일반입찰 : (첫째년도) 입찰가, (둘째년도 이후) 해당연도 재산가액×입찰당시 대부료/입찰당시 재산가액
- 수의계약 : 해당연도 재산가액×상가별 대부요율
- 공유(일반)재산의 위·수탁 대부 : 일반입찰에 의한 낙찰가

- 광고·부대수입 부과기준

- 최고가 입찰에 따른 낙찰가(※예정가액:사용료 원가조사 결과 반영)

□ '22년 상반기(5차) 지원현황

○ 지원기간 : '22. 1 ~ 6월 (6개월)

○ 지원내용

임 대 료 매출 감소액에 따라 50% ~ 60%까지 차등 감면(환급 또는 감액)

관 리 비 공용 관리비 (청소·경비 인건비) 감면

납부유예 차기 임대료 부과 이전으로 한하고, 연체료 미부과

○ 임대료 감면기준 : '19년 매출액 대비 '22년 매출액 감소율

(0%초과~10%이하:50% / 10%초과~20%이하:55% / 20%초과:60% 감면)

○ 추진일정 : 감면 신청 및 감면금액 확정('22.8월), 임대료 감면지원('22.9~10월)

○ 이와 관련하여 2020년 3월 31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에 따라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²⁾되어

○ 대부료 감정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상공인 피해경감 차원에서 서울시 일반재산의 대부료 일부를 감면해 왔음.

□ 지원실적('20~'21년)

○ 지원기준 : 점포 임대료 50% 감면, 공용관리비 감면, 납부유예

○ 감면지원 : 38,776백만원 (임대료 34,477백만원, 관리비 4,29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1차 ('20. 2~7월)	2차 ('20. 9~12월)	3차 ('21. 1~6월)	4차 ('21. 7~12월)
지원점포*	-	2,667	2,648	2,641	2,637
임 대 료	34,477	9,352	6,220	9,484	9,421

2)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② ~ ⑧ (생략)

관 리 비	4,299	1,150	767	1,191	1,191
* 공실 및 문화재단 등 감면 비대상 / '21년은 경기악화로 공실수 지속 증가					

○ 지원절차

공유재산심의회
감면 결정

자산관리과

➔

임대료
감면 안내

건설혁신과(공단)→임차인

➔

감면 신청 및
감면액 확정

임차인 → 공단

➔

임대료 감면

건설혁신과(공단)

- 서울시가 대부료 수입 감면시행으로 감면분만큼 세입 감소를 감내해야 하는 부분은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라도 경감해 준다는 측면에서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조치라 여겨지나,
- 금년 4월 18일 거리두기 전면해제, 4월 25일 법정 감염병등급 하향(1급→2급) 조정 등 코로나19 상황의 전환 국면에 따라 대부료 부과 단계적 정상화 또는 선별적 감면 등 세수확보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음으로, ‘그외수입’은 당초 174억 5백만원에서 54억 51백만원으로 조정하였는데 이는 맨홀정비 물량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포장공사 맨홀정비 청구 수입을 감액한 것임.
- 포장공사 맨홀정비비는 「도로법」 제91조³⁾에 따라, 10종의 맨홀에 대해 도로사업소에서 우선 불량맨홀을 정비한 후 각

3)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맨홀관리기관⁴⁾으로 정비비를 사후 부과('22년도 기준 개소당 약 1,700천원 계상)하여 징수함에 따라 '22년도 불량맨홀 정비물량인 8,646개에 대해 세입예산을 편성하였는데,

- 이와 상응하는 세출예산 편성 당시 예산과 검토 및 시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로사업소가 요청한 맨홀정비 세출예산을 대폭 감액(162억 4백만원→42억 5천만원)함에 따라 도로사업소에서 정비할 수 있는 맨홀의 개수가 감소하여 실제 징수 가능한 맨홀정비비로 세입을 감액조정한 것으로,
- 맨홀정비사업은 세입·세출이 연동함에 따라 예산편성 시점에서 세입 또한 동시 조정이 이루어졌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치 못해 뒤늦게서야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예산편성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2) 교통사업특별회계 : 해당 없음

4) 맨홀 종류별 관리기관

연번	맨홀종류	맨홀관리기관
1	상수도	서울시 8개 수도사업소
2	하수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치수과
3	전기	한전
4	통신	KT, SKT, SK브로드밴드, LGU+,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5	유선방송	딜라이브, CMB영등포방송
6	가스	서울도시가스, 귀뚜라미에너지, 한국가스공사,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대륜E&S
7	난방	서울에너지공사, 나래에너지서비스, 한국지역난방공사
8	소화전	서울시 25개 소방서
9	지하철	서울교통공사, 우이신설경전철, 서울메트로9호선
10	기타	육군 등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해당 없음

(4) 도시개발특별회계

- 이번 추정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990억원 대비 117억원이 감소한 873억원을 편성하였음.

[표] 추경예산안 사업목록(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사유
장	관	항	목				
총 계				87,300	99,000	△11,700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자치단체 간부담금	자치단체 간부담금	300	-	300	서부간선도로 주변 정비 사업 관련 금천구 분담금 편성
지방채	국내 차입금	지방채 증권	모집공채	87,000	99,000	△12,000	양재대로 구조개선 세출 지방채 감액에 따른 세입 지방채 감추경

- 먼저,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자치단체간부담금)의 3억원 증액은 기존 금천 자원재활용처리장을 서부간선지하도로 개착구간 지하공간에 이전 설치하는 ‘서부간선도로 주변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금천구 분담금(3억원)이 세입처리된 것으로,
- 이는 동 사업의 총사업비 1,063억 94백만원(공사비 889억원 + 보상비 175억원)에서 금천구청 분담금 88억 9천만원 중 기본 및 실시설계비 일부가 시에 납부된 것임.

○ 사업개요

- 목 적 : 기존 금천 자원재활용처리장 이전 후 폐기물적환장 건설
- 위 치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5-75일대 (서부간선도로 지하)
- 규 모 : 연면적 10,190㎡, 지하2층 (길이 274m, 폭 18~25m, 높이 17m)
- 사업기간 : 2018 ~ 2026

- 시 설 : 생활 및 음식물폐기물 등 적환시설
- 총사업비 : 1,064억원 (보상비 175억원 제외 시 총공사비 889억원)
- ※ 사업 대상지 부지는 무상사용이 가능한 국·공유지임

- 참고로, 2013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계획 수립 당시 서울시는 금천구 현장시장실을 운영하면서 사업 대상지 주변에 위치한 재활용 처리장 악취발생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자원 재활용처리장 이전을 검토하였고,
- 2020년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서울시와 금천구가 당초 ‘전체 시설 이전’에서 ‘재활용선별시설 등을 제외한 시설 이전’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2021년 5월 서울시와 금천구 간 사업비 분담방안(총공사비의 90% 시비, 10% 구비)에 합의하여 현재에 이름([표] 참조).

[표] 사업비 분담

(단위:백만원)

구분	계	시비	구비	비고
계	106,394	97,504	8,890	
공사비	72,541	65,287	7,254	
설계비 등	4,067	3,660	407	
감리비	4,637	4,173	464	
기타	7,649	6,884	765	
보상비	17,500	17,500	-	

- 다음으로, 지방채(국내차입금) 발행수입 120억원 감액은 ‘양재대로 구조개선’사업에서 지장물 이설 지연에 따른 후속공정 지연으로 인한 세출 감추경(p.36 ‘4) 양재대로 구조개선’ 검토내용 참조)에 연동된 것으로,

- 2022회계연도 안전총괄실 도시개발특별회계 총 지방채 발행
세입분 990억원에서 동 사업의 지방채 발행계획분 210억원
중 일부인 120억원을 감액조정 한 것임.

[표] 2022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지방채 발행계획

연번	사 업 명	과 목	차입액(천원)
1	월드컵대교 건설	모집공채	14,500,000
2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10,000,000
3	국회대로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31,000,000
4	신림봉천터널 건설		22,500,000
5	양재대로 구조개선		21,000,000
합 계			99,000,000

나. 세출 예산안

(1) 일반회계

- 안전총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운행제한차량 단속’ 등 3개 사업에서 9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시 재난회복력 구축 및 강화’사업에서 1억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표] 참조).

[표] 추경예산안 사업목록(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1,082	1,150	△68		
계속 사업	도시 재난회복력 구축 및 강화	-	160	△160	전쟁의 장기화 및 신종감염병 재개 등으로 인한 해외 주요도시 참여저조 우려로 인한 감추경	p.1173
신규 사업	국고보조금반납(안전지 원과)	8	0	8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사업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
계속 사업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출입구 사용료	352	318	34	'22년도 예산편성 시 '21.6~7월 물가상승률 잠정기준(1.8%)으로 편성되었으나, '21.12.31.통계청 최종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년 대비 2.5%상승하여 예산부족분 발생(34,227천원)	p.1178
계속 사업	운행제한차량 단속	721	671	50	예산편성 시 반영된 유가 대비 현재 유가 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인상분 반영	p.1279

1) 도시 재난회복력 구축 및 강화 (사업별설명서 p.1173)

- 동 사업은 세계 100대 도시 간 도시회복력 강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서울 국제 도시회복력 포럼」을 개최하여 글로벌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1억 6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음.

[표]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0	(x-) 160,000	(x-) △ 160,000
사무관리비	(x-) 0	(x-) 10,000	(x-) △ 10,000
행사운영비	(x-) 0	(x-) 150,000	(x-) △ 150,000

-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코로나-19,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등 신종 감염병 재개 등으로 인해 해외 주요 도시들의 포럼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우려되어 사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임.
- 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2020년과 2021년에는 온라인 포럼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기편성된 당해연도 사업을 팬데믹을 이유로 잠정 중단한 것은 사업추진 의지가 약했다고 보여지며,
- 동 사업 중단과 동시에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해외도시 협력방안 수립’을 목표로 기존 행사의 방향성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바, 철저한 사업추진 계획없이 전년도 사업을 이어 받아 관성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
- 이처럼 사업계획 변경으로 편성된 예산을 전액 감액하는 것은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을 낳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것인바 시정되어야 할 것임.

2)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출입구 사용료 (사업별설명서 p.1178)

- 동 사업은 강남터미널 공공출입구에 대한 토지사용료 납부로 출입구 기능을 유지하여 이용시민의 보행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3억 18백만원 대비 3천 4백만원 (10.7%) 증가한 3억 5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352,454	(x-) 318,227	(x-) 34,227
사무관리비	(x-) 352,454	(x-) 318,227	(x-) 34,227

- 이는 당해연도 예산편성 시 '21.6~7월 물가상승률 잠정기준 (1.8%)을 반영하여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출입구(9번, 11번)의 사용료를 산정하였으나, 통계청에서 2022년 물가상승률을 2.5%로 최종 발표('21.12.31.)함에 따라 예산부족분을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 참고로,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9·11번 출입구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의 사유지 내 위치해 있어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가 시를 상대로 원고 소유인 토지 위에 서울시가 출입구를 설치하고 1979년부터 점유·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대법원 판결(대법원2014다230948, 2015.2.12.)에서 시가 패소함에 따라

- 부당이득금을 포함한 판결금 총 39억원(부당이득금(5년분):31억원, 가산금(5%): 3억원, 지연손해금(20%):5억원)을 기지급하였으며 시는 매년 대부료 갱신계약을 체결(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 반영)하여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음.

☐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출입구 시설현황

- 대상지 : 서초구 반포동 19-4(대)
- 면 적 : 강남터미널지하도상가 9·11번 출입구 495.9㎡
※ 서울고속버스터미널(87,725.1㎡), 9번 출입구(231.1㎡), 11번 출입구(264.8㎡)
- 도시계획 : 일반상업지역,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하도로)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최초 결정(건고108호, '75.6.23.)

☐ 대법원 판결 개요

- 사 건 명 : 2014다230948 부당이득금반환등
- 원 고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주식회사
- 피 고 : 서울특별시
- 판결선고 : 2015.2.12
- 소송결과 : 상고기각 (서울시 패소)
- 판결요지 : 원고 소유인 토지 위에 피고가 지하상가 출입구를 설치하여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 판 결 금 : 총 39억원
부당이득금(5년분):31억원, 가산금(5%): 3억원, 지연손해금(20%):5억원

☐ 서울시 주장

- 원고가 고속터미널역 지하1층 상가의 무상사용이 종료되어 사용료를 부과받게 되자 보복적, 대응적 차원에서 각 토지에 지하상가 출입구를 설치한 이후 약 34년이 경과한 후에야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의 소송의 경위, 성격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어서는 안됨

☐ 서울고속터미널(주) 주장

-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2008.4.23.부터 토지의 인도 완료시까지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주장

3) 운행제한차량 단속 (사업별설명서 p.1279)

- 동 사업은 도로시설물 구조 및 포장 손상 방지를 통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6억 71백만원 대비 5천만원(7.4%)이 증가한 7억 2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721,100	(x-) 671,450	(x-) 49,650
사무관리비	(x-) 258,548	(x-) 258,548	(x-) 0
공공운영비	(x-) 206,592	(x-) 156,942	(x-) 49,650
국내여비	(x-) 168,160	(x-) 168,160	(x-)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10,800	(x-) 10,800	(x-) 0
시설비	(x-) 51,000	(x-) 51,000	(x-) 0
자산및물품취득비	(x-) 26,000	(x-) 26,000	(x-) 0

- 이는 최근 LPG 가격이 상승⁵⁾함에 따라 과적 단속차량의 유류비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 참고로, 서울시는 「도로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79조 및 서울시 운행제한 시설물 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04-119호)에 근거하여 운행제한차량 단속⁶⁾을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수행

5) LPG 가격추이(서울지역) : 965원('21.7.) → 1133원('22.1.) → 1227원('22.4.) → 1159원('22.7.)

6) 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

- 총중량 40톤 및 축하중 10톤 초과차량

을 위하여 이동단속반 17개 반에서 LPG 단속차량 17대를 운영중에 있음.

(2) 교통사업특별회계

- 안전총괄실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교통개선분담금 계정)’ 사업에서 45억 4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교통개선분담금 계정)’사업에서 3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음([표] 참조).

[표] 추경예산안 사업목록(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30,529	29,184	1,345		
계속사업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교통개선분담금 계정)	28,729	24,184	4,545	공사 준공을 위한 시설물 관리부서 요구사항 반영 등	p.1244
계속사업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교통개선분담금 계정)	1,800	5,000	△3,200	설계 및 공사 일정을 감안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외 예산 감추경	p.1249

1)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교통개선분담금 계정) (사업별설명서 p.1244)

- 동 사업은 제2자유로 종점부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교량 확

-
- 차량의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초과차량
 - 위 기준 외 별도제한(총중량 32톤, 20톤, 13톤 등) 초과차량(113개소) : 서울시 공고

장, 신호연동, 지하차도 설치를 하려는 계속사업으로 당해연도
기정예산 241억 84백만원 대비 45억 45백만원(18.8%) 증가한
287억 2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28,728,826	(x-) 24,183,701	(x-) 4,545,125
시설비	(x-) 27,353,384	(x-) 23,338,259	(x-) 4,015,125
감리비	(x-) 1,355,442	(x-) 825,442	(x-) 530,000
시설부대비	(x-) 20,000	(x-) 20,000	(x-)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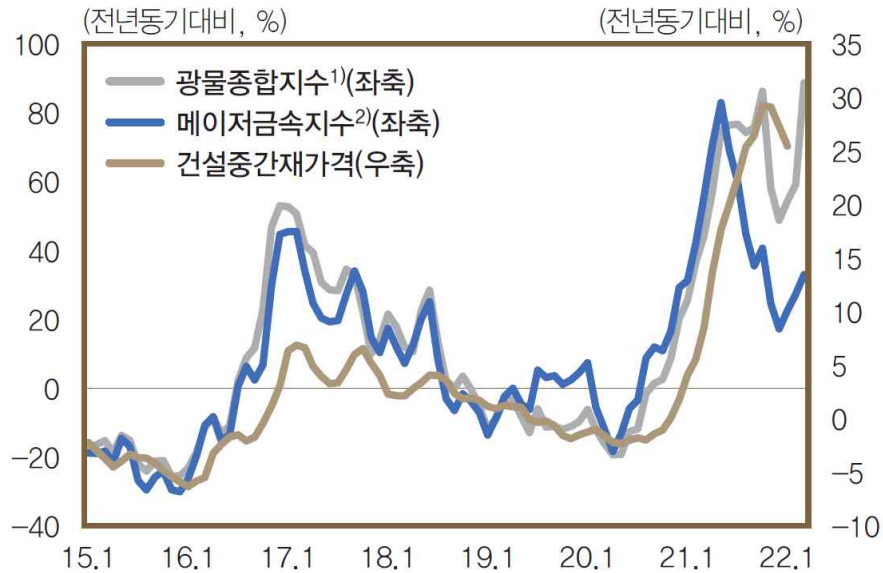
- 이는 국제 원유 및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관급자재가격 상승
분 11억 3천만원, 방호울타리 변경 및 조경복구 등 유지관리부
서(서부도로사업소, 마포구청 등)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24억 85백
만원,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비 증액 4억원, 공기연장에 따른 추
가 감리비 5억 3천만원에 대한 소요액 총당에 해당함.

[표] 사업추진 공정 및 예산집행 현황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고
예산집행 (백만원)	기정예산	3,848/24,184	5,710/24,184	14,626/24,184		
	추경요청			4,545/4,545		
• 구조물공(지하차도)					슬라브 벽체 등시공	3,743백만원
• 구조물 부대공					교통표지판 등 부대공	91백만원
• 전기 및 통신공사					수변전 설비 및 배수펌프	1,146백만원

- 원유 및 원자재 가격상승과 관련하여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
라이나 침공으로 원유부터 금속, 곡물까지 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 건설자재 가격상승을 초래한 것이며, 이를 반영하기 위한
금회 증액은 불가피하다 사료됨.



주: 1) 국내 산업수요가 높은 15개 광물의 가격

2) 철광석, 동, 알루미늄, 연, 니켈, 아연, 주석 등

[그림] 원자재가격과 건설자재 가격(자료: KOMIS 한국자원정보서비스)

- 다만, 금회 증액된 ‘한강상 교량 연결로 구조개선(올림픽대교 남단)’ 사업에서도 관급자재 가격상승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미뤄볼 때 건설자재 가격상승이 동 사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 소요예산 증액의 필요시기 상의 차이만 있을 뿐 다른 건설사업에서도 예산부족현상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여겨짐.
- 또한, 혹시라도 원가절감을 위해 저가의 불량 자재가 건설공사에 유입되어 건설품질을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음.

2)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교통개선분담금 계정) (사업별설명서 p.1249)

- 동 사업은 서울 동남권 대규모 개발에 따른 장래교통수요 증가 대비 및 송파대로, 동부간선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탄천변 동측도로를 구조개선하려는 계속사업으로 당해연도 기정예산 50억원 대비 32억원 감소한 18억원(64%)을 편성하였음.

[표]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1,800,000	(x-) 5,000,000	(x-) △3,200,000
시설비	(x-) 1,500,000	(x-) 4,500,000	(x-) △3,000,000
감리비	(x-) 300,000	(x-) 500,000	(x-) △200,000

- 이는 당초 동 사업의 1구간 내 송파 문정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 인접 도로 지하화에 대한 실시설계를 '22.5월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당초 본예산 5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⁷⁾에 따른 보완설계⁷⁾ 및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⁸⁾에 따른 추가설계⁸⁾ 등을 위해 실시설계가 8월까지로 연기됨에 따라

7)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2. 13.] [국토교통부령 제922호, 2021. 12. 13., 일부개정]

- 변경내용 : 도로 정지시거 75m → 80m, 종단 곡선 변화율 상향
- 변경근거 : 개정 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진행 중인 실시설계에 변경사항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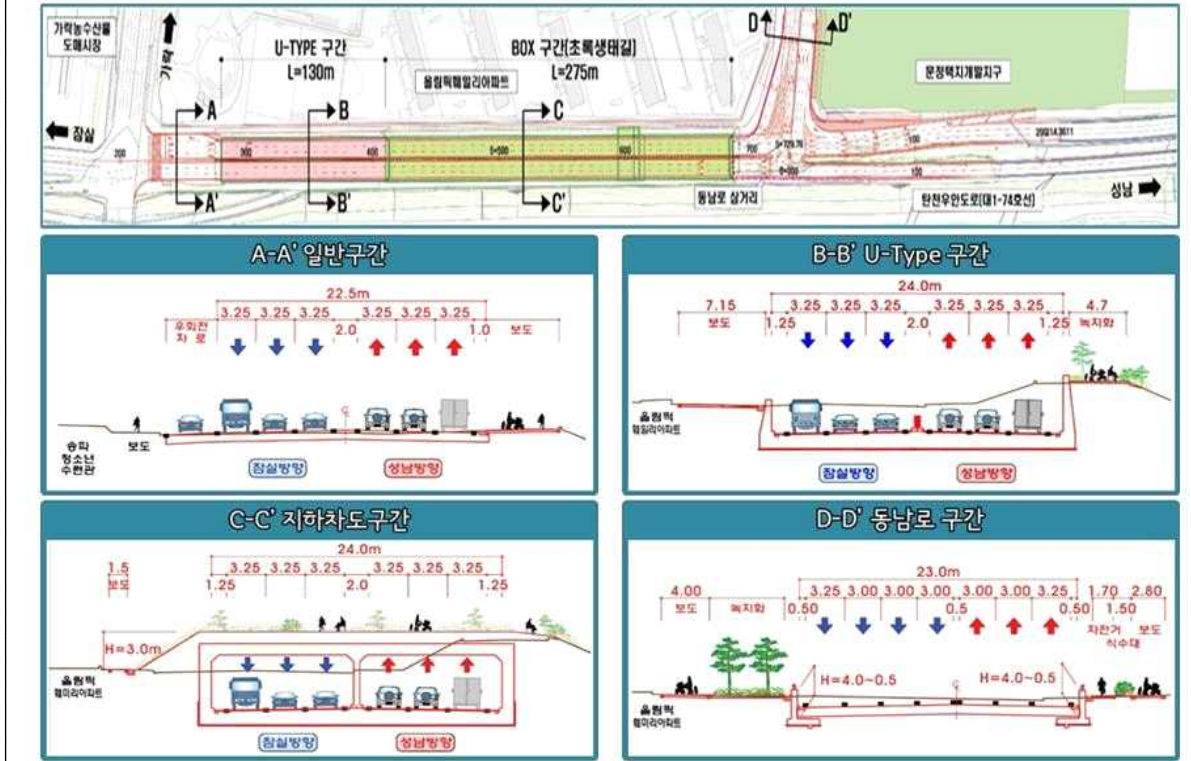
8)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시행 2021. 12. 2.] [국토교통부예규 제336호, 2021. 12. 2., 전부개정]

- 반영내용 : 터널구간 250m 이상인 지하차도 내 비상경보설비 등 방재시설 강화

□ 1구간

- 왕복 6차로, 지하차도 405m/1개소(U-Type 포함). 초록생태길 275m
- 총사업비 : 474억원(공사비 410, 감리비 21, 예비비 43)



[그림] 1구간 평면도

- 금년 잔여기간 동안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추진으로 집행 가능한 1구간 설계 용역비와 공사비 13억원, 2구간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원을 제외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을 감액한 것임.

[표] 사업추진 공정 및 예산집행 현황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고
예산집행 (백만원)	기정예산			26/5,000		
	추경예산				1,774/1,800	
• 1구간 설계				실시설계		
• 1구간 공사				지하차도 설치 공사	지하차도 설치 공사	
• 2구간 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용역	

- 참고로, 동 사업은 '06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고, '07년 설계 용역에 착수했다가 지역주민의 도로 전면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조성 요구 민원으로 노선계획 변경 및 투자심사 이행을 위해 '12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이 일시 중지된 바 있으며,
- 이후 '16년 말 노선계획을 재검토하여 '17년에는 1구간에 대한 설계를 재개하고 LIMAC(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은 결과 1구간 사업의 우선 추진 및 2구간은 지하화 민원해소 대책 및 교차로 도로 용량 증대 방안 마련을 고려하여 사업 재검토하도록 조건부 승인이 결정된 바 있음.
- 이에 '21.5월 1구간 기본설계 완료 후 실시설계에 착수해 추진 중이며, 2구간은 타당성 재조사용역을 추진 중인 상태임.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해당없음

(4) 도시개발특별회계

- 안전총괄실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 등 14개 사업에서 1,082억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월드컵 대교 건설' 등 6개 사업에서 564억 9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표] 참조).

[표] 추경예산안 사업목록(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343,039	291,330	51,708		
계속사업	도시고속도로 연결로 추가설치	6,300	2,000	4,300	하반기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건축철거 공사비 등 공사비 및 감리비 추가 편성	p.1182
신규사업	서북-도심 연결 도로 네트워크 개선 기본구상	150	-	150	진행중인 민자사업(은평새길, 이수과천) 연계 노선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검토용역비 편성	p.1187
계속사업	한강상 교량 연결로 구조개선(올림픽대교 남단)	15,596	10,616	4,980	공사 준공을 위한 시설물 관리기관의 요청사항과 물가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공사비 증액 발생	p.1192
계속사업	월드컵 대교 건설	47,263	75,263	△28,000	수해예방기간(5.15.~10.15.) 하천내 공사 제한으로 공사가능일수 부족으로 시공물량 감소	p.1197
계속사업	울곡로(창경궁앞)구조개선	14,680	14,023	657	2022년 공사 준공 및 사업 완료를 위한 잔여 사업비 필요	p.1201
계속사업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2,500	11,492	△8,992	안양천 하천협의 지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준공 연기로 공사 착공 지연에 따른 '22년 공사분(선급금)을 제외한 공사비와 감리비 감액	p.1206
계속사업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	8,624	5,124	3,500	하반기 본선 평탄화 작업 및 수로BOX 공사를 위한 추가예산 필요	p.1210
계속사업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61,531	35,578	25,953	'25년 완료를 목표로 '22년 계획된 주요 공종인 가시설공사 및 연속교 통류 우회, 선유고가 철거 후 교차로 정비 등을 위해 추경예산 확보 등	p.1215
계속사업	천호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	2,000	1,000	1,000	천호IC 내 올림픽대로 진출입 연결로 설치 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 편성	p.1220
계속사업	양재대로 구조개선	10,000	22,000	△12,000	각종 지장물(전력구, 상수도, 통신 등) 이설공사 지연에 따른 후속공정 지연으로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공사비 감액	p.1224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계속사업	서울시 내외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요 간선도로 종합검토	500	300	200	서울시 내외 각종 개발사업 관련 현안에 대한 분석대상사업 추가(3건)	p.1228
계속사업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	73,308	13,308	60,000	'22년 자치구 추진사업(區 확보예산)에 대한 시 보조금 확보	p.1232
계속사업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손실 보상	7,020	5,020	2,000	토지보상 및 판결금 지급 소요액 20억원 추가 필요	p.1236
계속사업	천호대교 남단 하부도로 구조개선 타당성조사	149	200	△51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금 외 잔여 사업비 감추경	p.1240
계속사업	노후 포장도로 정비	79,394	77,044	2,350	포장정비 주재료인 아스팔트 콘크리트 단가가 연초대비 36% 상승	p.1254
신규사업	홍지문-정릉터널 비탈면 안전시설 설치	1,200	-	1,200	비탈면이 높고 점검, 작업공간이 좁고 안전장치가 없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p.1258
계속사업	도로시설물 노후 조명시설 개선	4,990	4,079	911	노후된 가로등주에서 균열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시민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빠른 교체 필요	p.1262
계속사업	도로터널 노후 방재시설 개량	3,665	2,665	1,000	2022년 풍수해 안전대책및 태풍 등에 대비하여 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	p.1267
계속사업	성산대교 성능개선	2,858	9,858	△7,000	가교배제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재설계 등으로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 공사비 감액	p.1271
계속사업	영등포역고가 보수공사	1,310	1,760	△450	공사 준공(장기계속공사-3차)에 따른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감추경	p.1276

1) 서북-도심 연결 도로 네트워크 개선 기본구상(사업별설명서 p.1187)

- 동 사업은 대통령실 이전, 은평새길 추진 등 변화된 주변 여건을 고려해 서북-도심권 연결 주요 간선도로의 연결성, 이동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려는 것으로 금회 기본구상 용역비 1억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표]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150,000	(x-) 0	(x-) 150,000
시설비	(x-) 150,000	(x-) 0	(x-) 150,000

- 금회 신규편성 이유는 서북지역(은평, 종로 등)은 지리적 특성으로 도심 진입 경로가 제한적이고, 통일로 등 간선도로에 상습지·정체가 빈발하여 차량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도로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임.
-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적격성 재조사를 의뢰한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을 비롯하여 대통령실 이전 등 주변 여건변화를 고려한 서북-도심권 연결·이동성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려는 것으로 파악됨.

□ 용역 시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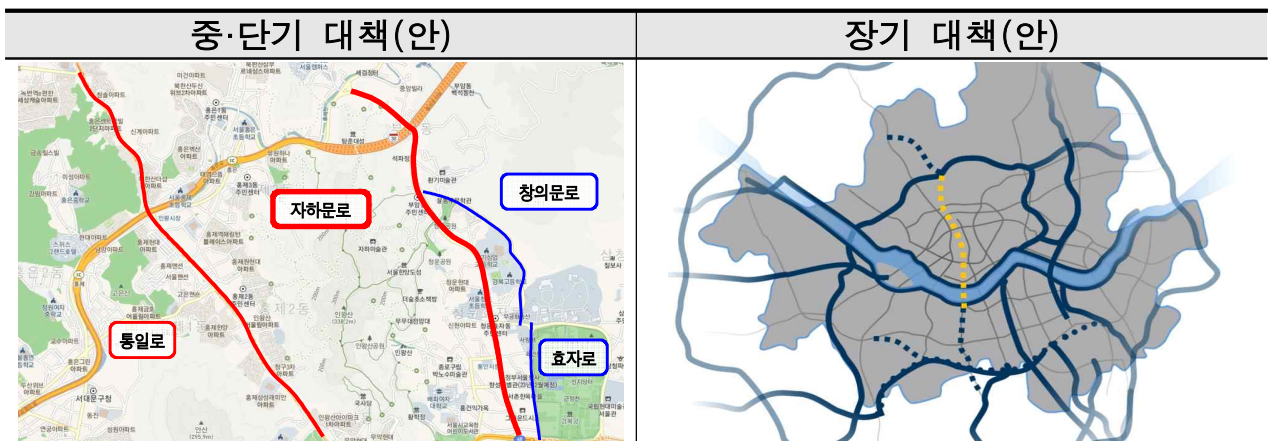
○ 용역개요

- 용역명 : 서북-도심권 연결도로 네트워크 개선 기본구상
- 과업범위 : 5개 지역(종로, 용산, 은평, 서대문, 중구) 주요 간선도로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 용역비 : 300백만원

○ 주요과업 내용

- 간선도로 현장조사, 교통량 및 교통시설, 지장물 조사 등
- 장래 교통수요 예측 및 상습 정체구간 원인 분석
- 개선방안 도출(중·단기, 장기 대책) 및 사업 우선순위 검토 등

○ 한편, 본 용역은 도심 진입 교통개선을 위한 자하문로, 창의문로의 시간별 탄력 운영을 통한 도로기능 강화 등 중·단기대책 구상과 은평새길부터 이수~과천 고속도로까지의 단절구간 연결 사업 타당성 검토 등 장기대책 구상을 검토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



[그림] 용역 검토방향

○ 따라서, 동 사업의 추경예산안 신규편성에 대한 당위성 및 시급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다만, 이같이 주변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도로 네트워크를 개선하려는 사업은 서북권역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조사할 필요도 있다고 여겨짐.

2) 월드컵 대교 건설 (사업별설명서 p.1197)

- 동 사업은 성산대교와 그 주변도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내부 순환도로와 증산로, 서부간선도로, 공항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량을 건설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기정예산 752억 63백만원 대비 280억원(37.2%) 감소한 472억 6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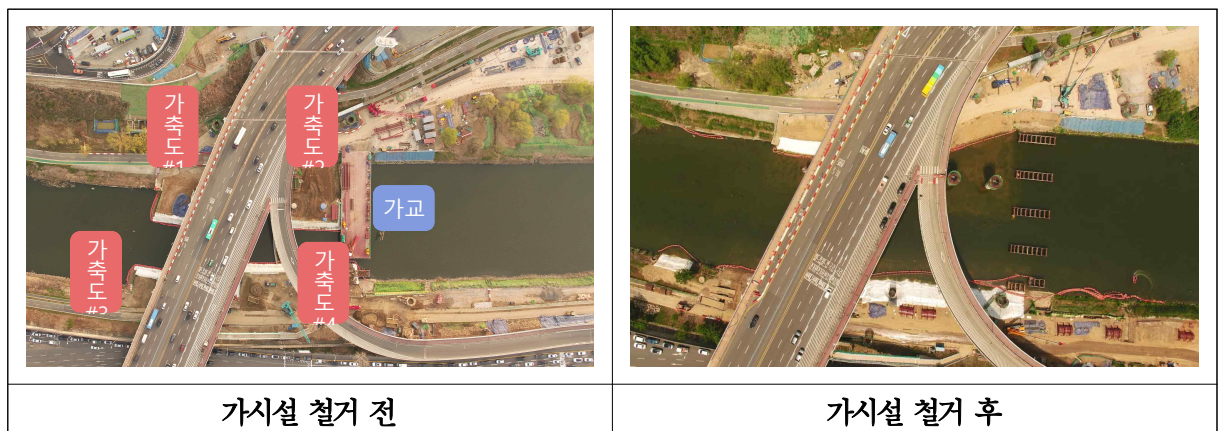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47,263,000	(x-) 75,263,000	(x-) △ 28,000,000
시설비	(x-) 45,420,900	(x-) 73,420,900	(x-) △ 28,000,000
감리비	(x-) 1,842,100	(x-) 1,842,100	(x-) 0

- 이는 당초 동 사업이 '22.1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 마무리를 위한 잔여예산을 편성했으나 월드컵대교 남단 안양천을 횡단하는 3개(Ramp-B,D,H) 연결로 설치공정이 수해예방기간(5.15~10.15.) 공사 중지, 지장물 이설(통신, 차집관로 등)로 인한 기간소요 등으로 연기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을 감액한 것임.

[표] 사업추진 공정 및 예산집행 현황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고
예산집행 (백만원)	기정예산	15,600/75,263				
	추경예산				12,400/28,000	
•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풍수해기간 공사제한		토공, 구조물공 등

- 이는 수해예방기간 공사중단과 관련해 하천관리과(하천관리과-23678, '22.5.30.)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우기중 하천 내 공사를 중지토록 했을 뿐만 아니라,
- 하천관리과의 요청에 따라 하천 유수소통 지장을 초래하는 월드컵대교 남단 연결로(Ramp-B,D,H)에 설치한 횡단 가도 및 가축도 등의 가시설물을 수해예방기간 동안 임시철거하도록 함에 따라 정상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임.



- 다음으로, 지장물 이설로 인한 기간소요 건은 월드컵대교 남단연결로 교대 및 교각 기초가 KT관로, 우장산 상수관로 및 분류하수관 등과 저촉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지장물을 이설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 상기와 같은 사유들로 인해 당초 편성한 기정예산(752억 63백만원)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금회 280억원을 감액하게 된 것에 대해 일정부분 이해는 되지만 감액규모가 280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 당시 우기철 등을 고려한 신중한 공사비 추계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인바, 시

정되어야 할 것임.

- 한편, 동 사업의 경우 당초 '10년 3월 착공하여 '15년 8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설계변경 또는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사업 등 연계사업의 추진일정 반영 등으로 인한 반복된 공사지연으로 준공을 '22.12월로 변경했다가 상기 감추경 사유로 인해 공사가 또다시 지연되어 재차 준공을 '24년 6월로 연장하기에 이름.
- 참고로, 월드컵대교의 본선 및 주요 연결로는 '21년 9월 개통되어 공용중에 있으며, 안양천을 횡단하는 연결로 (Ramp-B,D,H)는 현재 하부공 시공중이며 공정율은 37%인 것으로 파악됨.

3)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사업별설명서 p.1206)

- 동 사업은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과 연계하여 기존 서부간선도로를 일반도로화하고 차로수 및 차로폭을 조정하여 자전거도로, 보도, 녹지, 커뮤니티 신설 등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도로로 재편하고 친환경 가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당해연도 기정예산 114억 92백만원 대비 89억 92백만원 (78.2%) 감소한 25억원을 편성하였음.

[표]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2,500,000	(x-) 11,492,000	(x-) △8,992,000
시설비	(x-) 2,371,000	(x-) 10,978,000	(x-) △8,607,000
감리비	(x-) 129,000	(x-) 514,000	(x-) △385,000

- 이는 당초 '21년 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22년 상반기에 공사에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공사비(109억 78백만원)와 감리비(5억 14백만원)를 편성했던 것이나,
- 해당 공사구역 내 이면도로 진출입을 위한 도로종단 하향조정 및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안양천 제방 일부가 저축되어 이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하천협의를 지연되면서 '22.6월 말에야 하천협의를 완료되었음([표] 참조).

[표] 한강유역환경청과 하천협의를 경과('20.11.~'22.07.)

구분	일자	주요 협의 내용 및 회신 일자
1차	2020.11.05. (방문 협의)	(서울시) 제방 저축 폭 축소 : 최대 B=1.7m(감 1m), 경사로 : 8개소(감 5개소) (서울청) 공사중, 공용중 제체 안정성 확보 가능한 옹벽 형식 바람
2차	2021.03.03. (공문 제출)	(서울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서울시→서울청 하천계획과)
3차	2021.04.07. (방문 협의)	(서울시) 특정공법 심의('21.03.23) 결과로 선정된 구역별 옹벽 형식 설명 (서울청) 제방안정성 검토서 및 수리검토서 보완 요청
4차	2021.04.08. (공문 회신)	(서울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및 협의기관 협의요청에 대한 회신 ⇒ 기존 제방 축소화에 따른 옹벽 세부도면과 제방 안전성 검토 보완 후 재협의
5차	2021.04.29. (방문 협의)	(서울시) 제방 안정성 검토 결과 및 제방 보강대책 상세 설명 (서울청) 옹벽 배면(제방측)의 배수 및 제방 채움 공법 상세 자료, H파일 시공 후 공극에 콘크리트 타설 방법 상세 자료 요청 등
6차	2021.05.31. (방문 협의)	(서울시) 분야별 전문가(토질, 수자원) 검토의견서 제출 (서울청) 가시설 공법 자료 보완 요청, 시추조사 위치, 제방 제외지 표현 등
7차	2021.07.19. (방문 협의)	(서울시) 가시설 공법 자료 보완, 기존 도면 수정 등 (서울청) 안양천 하천 기존 제방 옹벽 저축 불가 의견 제시
8차	2021.08.25. (방문 협의)	(서울청) 기존 옹벽 저축 불가피 설명 (서울청) 제방 미저축안 보완 의견 제시, 가시설 미설치 요청
9차	2021.11.02. (공문 제출)	(서울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구분	일자	주요 협의 내용 및 회신 일자
10차	2021.11.03. (방문 협의)	(서울시) 가시설 앵커 전체 미설치 및 제방측 점검로 폭원 축소(B=1.5m→1.0m), 경사로 5개소(감 3개소) ⇒ 전체 연장 8.1km 중 제방 저촉 연장 2,090m → 1,450m (감 640m) (서울청) 제방 옹벽 미저촉시 서부간선도로 종단 하향은 가능 의견
11차	2021.11.09. (공문 회신)	(서울청) 하천점용허가 신청 후 재접수토록 회신 ⇒ 서울시(자치구포함)에서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타 사업들의 하천점용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기간연장 허가 신청서를 접수·처리 후 신규 사업(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의 허가 절차를 이행할 예정임
12차	2022.02.23. (공문 제출 및 회신)	(서울시) 저촉 축소안 재협의 요청(오금-고척교, 구일고가교 구간, 제방 800m 저촉) (한강청) 하천법 제33조에 적합하도록 검토 회신
13차	2022.03.18. (공문 제출 및 회신)	(서울시) 저촉 축소안 재협의 요청(오금교-고척교 구간, 제방 680m 저촉) (한강청) 제방 제내측 사면 저촉 제척 검토 회신
14차 (완료)	2022.06.23. (공문 제출 및 회신) (2022.07.13. 완료)	(서울시) 안양천 제방 사면 저촉 최소화 제출(제방 옹벽 전구간 미저촉) (한강청) 경사로 설치시 제체 훼손 최소화 방안 검토, 구일역앞 보도육교 기초 시공중 발생하는 제체 교란 최소화 방안 검토 등

○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 준공도 연기되고 공사 착공도 지연되면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비(86억 7백만원)와 감리비(3억 85백만원)를 감액한 것임.

[표] 사업추진 공정 및 예산집행 현황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고
예산집행 (백만원)	기정예산	0 / 11,492	0 / 11,492			
	추경요청			0 / 2,500	2,500 / 2500	
• 실시설계 및 공사 발주				설계 완료	공사 발주	

○ 한편, 동 사업이 '13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시행을 개시하여 '16년 기본설계에 착수한 이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건설기술심의 등을 이행하고 '19년 7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22년 8월 설계를 완료하기까지 9년여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 금회 89억 92백만원의 대규모 감추경에서 미루어 알 수 있듯이 당초 준공기한 역시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인바, 추가적인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4) 양재대로 구조개선 (사업별설명서 p.1224)

- 동 사업은 강남구 구룡터널 사거리와 삼성의료원 교차로 간 지하차도 2개소(폭 4차로, 연장 1,634m) 신설과 기존 일원지하차도 종단개선(폭 6→4차로, 연장 460m)을 위한 사업으로 당해 연도 기정예산 220억원 대비 120억원(54.5%) 감소한 100억원을 편성하였음.

[표]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10,000,000	(x-) 22,000,000	(x-) △ 12,000,000
시설비	(x-) 9,200,000	(x-) 21,200,000	(x-) △ 12,000,000
감리비	(x-) 800,000	(x-) 800,000	(x-) 0

- 이는 대모지하차도 공사 시행 중 사업구간 내 전력구, 통신선, 상수도 등 지장물 이설이 지연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속공정 공사비를 감액한 것임.

[표] 사업추진 공정 및 예산집행 현황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고
예산집행 (백만원)	기정예산	0/22,000	4,505/22,000			
	추경예산			2,500/10,000	2,995/10,000	
• 전력구, 상수도, 통신이설 (지장물 이설 공정)						'22.12. 완료예정
• 대모지하차도 건설공사 (구조물 가시설 설치 공정)				지하차도 가시설 공사	지하차도 구조물 공사	23.06. 완료예정

○ 먼저, 전력구 이설과 관련해서는 공사구간 내 전력구 실제 위치확인을 위한 줄파기 시행결과 한국전력에서 제공한 자료에 기초한 고압선로 설계위치와 실제위치가 상이⁹⁾하여 한전 측과의 전력구 이설협의로 인한 기간소요로 지연되었으며,

〈전력구 이설 추진경과〉

- '19.6.19 : 한전전력구 지장물 저촉 확인
- '20.9.24 : 한전전력구 이설 실시설계 완료
- '21.6.18 : 동절기 전력수급집중기간 송전선로 정전작업 불가 고려하여 예정공정 수립토록 의견통보
- '22.2.19 : 한전송전케이블(154kv) 줄파기 위치확인
- '22.3.08 : 한전전력구 분기구 및 자연환기구 변경시공계획 협의

○ 다음으로, 통신선로 이설 관련해서는 KT 외 6개 기관과 통신선로 이설협의를 위한 합동회의를 '22.1월 실시하고 이설을 요청했으나 해당 기관의 통신선로 및 통신주 이설이 지연됨에 따른 것임.

〈통신선로 이설 추진경과〉

- '22.1.12 : 지장물 이설 관련 유관기관 합동회의 협조요청
- '22.1.18 : 지장물 이설 관련 유관기관 합동회의 1차

9) (당초) 고압선로 토피고 H=1.15m, (실제) 고압선로 토피고 H=2.45m

- `22.3.29 : 대모지하차도 1,4단지(한전주 및 통신주)이설 재요청
- `22.4.12 : 지장물 이설 관련 유관기관 합동회의 2차
- `22.5.13 : 대모지하차도 KT 통신선로 이설 촉구 요청
- `22.5.31 : 대모지하차도 KT 통신선로 이설 촉구 재요청
- `22.7.09 : 대모지하차도 KT 통신선로 이설완료

- 마지막으로, 상수관로 이설과 관련해서는 시 상수관로 (D=1800mm)와 한전 개포전력구의 간섭 발생으로 가시설 공법 변경¹⁰⁾ 등에 관한 이설협의를 위한 기간소요로 상수관로 이설이 지연됨.
-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 분배차원에서 연내 집행이 불확실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되나, 그간 도심 지하차도 공사에서 지장물 이설로 인한 지연이 비일비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은 시정되어야 할 것임.
- 게다가 동 사업의 금년 기정예산 220억원 중 21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예산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라는 점에서 비록 실제 지방채 발행이 이뤄지지 않는 않지만,
- 지방채라는 것이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재정운영의 경직화 및 지방채 상환능력 저하에 따른 재정건전성 저해 가능성과 전위효과¹¹⁾에 의한 지출예산의 지속적인 팽창우려를

10) (당초 가시설) H-pile+토류벽 → (변경 가시설) SK판넬

11) 전위효과가설: 전쟁·공황과 같은 비상시에 증액된 조세는 위기가 끝난 후에도 판막효과(瓣膜效果, ratchet effect)로 인해 쉽게 줄어들지 않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데 이용되는 전위효과(displacement effect)가 나타나게 된다는 피콕(Alan T. Peacock)과 와이즈만(Jack Wiseman)의 가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채 발행에 의한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부득이 부족한 재원에 한해 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5) 서울시 내외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요 간선도로

종합검토(사업별설명서 p.1228)

- 동 사업은 서울시 내외 각종 개발사업 및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민자도로 등 교통사업이 시 주요 간선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연도 기정예산 3억원 대비 2억원(66.7%) 증가한 5억원을 편성하였음.

[표]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500,000	(x-) 300,000	(x-) 200,000
시설비	(x-) 500,000	(x-) 300,000	(x-) 200,000

- 증가사유는 당초 용역을 통해 시 교통수요 데이터베이스를 현행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미확정 6건의 현안사업에 대한 교통분석 및 적정대안을 마련하려던 것에서 용산, 노들섬, 잠수교 개발에 대한 분석 과업을 추가했기 때문임.

【 2022년 당초 사업계획(안) - 6건 】

- 1) 市 교통수요 데이터베이스 갱신
- 2) 동작~서울간 도로개설에 따른 주변 간선도로 교통영향분석
- 3) 제2자유로~동부간선도로 간 도시고속도로 설치에 따른 교통수요 검토
- 4) 서울~고양 민간투자사업 주변 교통영향 분석
- 5) 남부순환로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주변 교통영향 분석
- 6) 강동구-송파구 동-서간 간선도로 용량 검토 및 교통축 개선사업

※ 사업의 시급성 및 중요성에 따라 용역 추진단계에서 사업변경 가능

○ 먼저, 추가 과업인 용산 개발 관련해서는 시 전략계획과 주관으로 추진 중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중심 新 용산 시대 신도심조성’과 연계하여 용산구 일대 간선도로망을 검토하고 장래 교통혼잡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로망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이고,



[그림] 용산구 개발에 따른 도로망 검토 및 개선방안 구상

- 노들섬 개발계획과 관련해서는 시 문화정책과 주관으로 추진 중인 ‘노들섬을 글로벌 예술섬으로 재조성’과 연계하여 노들섬 보행교 설치 타당성을 검토하고 안전성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정 대안을 모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됨.



[그림] 노들섬 보행교량 설치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안)

- 마지막으로, 잠수교 개발계획은 한강사업본부에서 총괄하고 있는 ‘잠수교 차 없는 거리’계획과 연계하여 잠수교 전면 보행화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 예상되는 도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대책 구상과 타당성 검증을 수행한다는 취지임.
- 상기와 같은 각종 개발사업들이 기존 간선도로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대형 개발사업 3개를 본 용역 과업 범위에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여겨짐.

○ 그러나 과업범위 및 대상이 늘어날 경우 과업의 품질이나 성과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염려도 있는바, 본 용역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그림] 잠수교 보행전용도로 조성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표] 최근 3년간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요 간선도로 종합검토 추진실적

2020 년도	○ 서울시 내·외 각종 개발사업 주변 적정대안 및 개선방안 검토 : 5개 현안사업 - 교차로 교통섬 개선사업 - 올림픽대로 증미산 연결로(가양9단지→여의도) 신설 - 성암로 성산자동차학원 주변 개선 - 동부간선도로 위례진출램프 개선 - 양재대로 개선에 따른 사후 검토
2021 년도	○ 서울시 내·외 각종 개발사업 주변 적정대안 및 개선방안 검토 : 5개 현안사업 - 동부간선도로 수서방면 진입램프 지정체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 - 동남권 일대 민간제안 고속도로 사업추진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 제4경인 고속화도로 민간제안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 고가철거(강남터미널, 영동대교북단)에 따른 주변 간선도로 교통영향분석 - 동부간선도로 단절구간 연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2022 년도	○ 서울시 내·외 각종 개발사업 주변 적정대안 및 개선방안 검토 : 5개 현안사업 - 노들남북 고가차도 철거에 따른 간선도로 영향 검토 - 압구정 고가차도 철거에 따른 간선도로 영향 검토 - 율곡로 구조개선 사업 교통개선 효과 조사 및 분석 - 구천면로 교통현황 조사 및 병목구간 개선대책 마련 - 도로구조개선 검토(3건)

6) 사업추진 경과를 감안해 금회 증액한 사업들 (사업별설명서 pp.1182, 1210, 1215, 1220, 1232)

○ 아래 [표] ‘사업추진 경과를 감안해 증액한 사업들’에서 보여주는 금회 5건의 증추정 사업들은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 재원의 한계로 인해 금년에 필요한 예산보다 적게 편성되었던 사업들로 금회 그 부족분 일부를 증추정하려는 것임.

[표] 사업 추진경과를 감안해 증액한 사업들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	사 업 명	당초 요구액* ①	기정예산	추경예산 ②	① - ②
1	도로 계획 과	도시고속도로 연결로 추가설치	5,000	2,000	6,300	-1,300
2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	15,000	5,124	8,624	6,376
3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93,783	35,578	61,531	32,252
4		천호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	3,500	1,000	2,000	1,500
5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	64,800	13,308	73,308	-8,508

※ 요구액: 2022회계연도 예산편성 당시 안전총괄실 사업부서 요구액(안전총괄실→예산과)

- 이 중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천호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 이상 3건의 사업에서는 당초 2022회계연도 예산편성 당시 예산과에 요구했던 금액 대비 금회 증추경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예산이 상당액에 달하고 있음을 보이고는 있으나,
- 안전총괄실 입장은 금회 추경액이 적정 예산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당초 예산편성 당시 예산과에 요구한 금액이 다소 과다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예산 삭감을 미리 감안하여 과다 예산을 요구하는 관행이 시정될 필요가 있다 하겠음.
- 따라서, 매년 결산에서 지적되는 과도한 사업추진 낙관으로 무리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월시키거나 불용하는 일을 최소화하여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해야 할 것임.

7) 노후 포장도로 정비 (사업별설명서 p.1255)

- 노후, 균열, 파손 등으로 포장상태가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고, 도로파손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770억 44백만원 대비 23억 5천만원(3.1%) 증가한 793억 9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79,394,000	(x-) 77,044,000	(x-) 2,350,000
사무관리비	(x-) 72,000	(x-) 72,000	(x-) 0
공공운영비	(x-) 14,000	(x-) 14,000	(x-) 0
재료비	(x-) 1,000,000	(x-) 1,000,000	(x-) 0
기타보상금	(x-) 8,000	(x-) 8,000	(x-) 0
시설비	(x-) 75,653,000	(x-) 73,303,000	(x-) 2,350,000
감리비	(x-) 2,600,000	(x-) 2,600,000	(x-) 0
자산및물품취득비	(x-) 47,000	(x-) 47,000	(x-) 0

- 이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도로포장의 주재료인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1톤당 단가가 당초 7만 8천원('22.1.1.)에서 10만 6천원('22.5.1.)으로 변동(증 28천원)됨에 따라 계획된 노후도로 포장 물량에 대한 단가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 도로의 파손 및 포장 불량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신속한 정비가 요구되나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공급 차질이 확대되고 있는 바,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품질관리와 함께 안정적 수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8) 홍지문-정릉터널 비탈면 안전시설 설치 (사업별설명서 p.1258)

- 동 사업은 홍지문터널부터 정릉터널에 이르는 비탈면에 낙석 방지책을 설치하고 수목관리 및 배수로 정비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으로 금회 1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표]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1,200,000	(x-) 0	(x-) 1,200,000
공기관등에대한자 본적위탁사업비	(x-) 1,200,000	(x-) 0	(x-) 1,200,000

- 이는 2022년 정기 위험성 평가¹²⁾ 및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홍지문~정릉 터널 비탈면의 경사가 가파르며, 점검·작업공간이 좁고 안전장치가 없어 시설물안전법 상 재해위험이 높은 시설물로 평가됨에 따라
-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작업자의 안전 확보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비탈면 낙석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임.
-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12) 위험성평가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2조
-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부상·질병의 발생 위험성을 추정·결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실시주기: 정기위험성 평가 (2022.01.03.~2022.01.07.) / 수시 위험성평가(필요시)
- 실시대상: 도로관리처 전 현장 및 사업장

시는 철저한 시설물 점검과 안전시설 확충으로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 여겨짐.

9) 도로시설물 노후 조명시설 개선 (사업별설명서 p.1262)

- 동 사업은 도로시설물의 노후 조명을 교체하여 에너지절감과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40억 78백만원 대비 9억 11백만원(22.3%) 증가한 49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4,989,997	(x-) 4,078,997	(x-) 911,000
시설비	(x-) 4,509,497	(x-) 3,598,497	(x-) 911,000
감리비	(x-) 80,500	(x-) 80,500	(x-) 0
공기관등에대한자 본적위탁사업비	(x-) 400,000	(x-) 400,000	(x-) 0

- 이는 2004년에 설치된 성수대교 가로등주의 몸체와 상부 접속부 등에서 균열이 발생함에 따라 이로 인한 시민안전사고가 우려되어 가로등주를 긴급 교체하기 위한 것임.
- 가로등주의 균열은 태풍 등 강풍에 매우 취약하고 전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교체의 시급성이 인정된

다 할 것이며, 이외에도 조명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적기에 정비 및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10) 도로터널 노후 방재시설 개량 (사업별설명서 p.1267)

- 동 사업은 노후된 방재시설의 교체로 재난사고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26억 65백만원 대비 10억원(37.5%) 증가한 36억 6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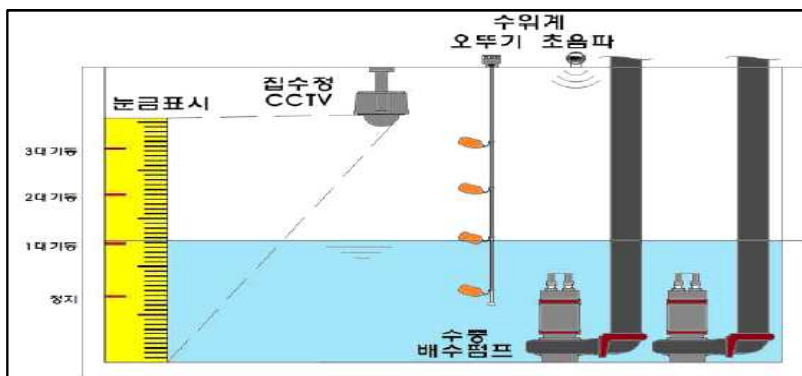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3,665,000	(x-) 2,665,000	(x-) 1,000,000
시설비	(x-) 1,983,677	(x-) 1,164,000	(x-) 819,677
공기관등에대한자 본적위탁사업비	(x-) 1,681,323	(x-) 1,501,000	(x-) 180,323

- 이는 지하차도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위험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53개소 지하차도의 집수정 내 고화질CCTV(200만 화소)를 설치하기 위한 것임.
- 현재 지하차도 집수정 수위는 수위계를 이용하여 상시 감시하고 있으나 수위계 고장이나 낙뢰 등으로 인한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의 마비에 대한 대책으로 집수정 감시 CCTV를 설

치하여 수위감시를 이중으로 강화하고 지하차도 침수에 대비 하겠다는 본 사업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 바이나,

- CCTV와 같은 전자제품은 습기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상시 습도가 매우 높은 집수정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CCTV의 내구성 저하가 예상되고 잦은 고장 발생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 수위계의 고장을 대비해 고가의 CCTV를 설치하기보다는 기존 수위계의 작동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강우시 정상 작동 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라 여겨지며, 더욱이 기존에 CCTV가 설치된 지하차도의 운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이는 집수정 내 기존 수위계와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CCTV가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하게 수위변화를 관측하려는데 있다는 점과 기존 수위계만으로도 원격으로 수위변화 상태를 실시간으로 얼마든지 관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CCTV를 수위계와 병행사용하려는 것은 다소 과잉대응이라 여겨지기 때문임.

☐ 집수정 CCTV 개요도



☐ **집수정CCTV 설치대상: 강제배수 지하차도 53개소(CCTV 61대)**

관리기관	지하차도	CCTV 설치	CCTV 미설치
계	66	13	53(61대)
동부도로사업소	7	-	7 (7탁 석촌 송파 문정 신원 위례(3개 집수정, 위례중앙(4개 집수정))
서부도로사업소	5	-	5 (서빙고, 모래내, 퇴계로, 성산, 증산)
남부도로사업소	7	7 (기설치)	-
북부도로사업소	8	-	8 (창동, 녹천, 월계, 월계2,3, 방학, 하계, 담터)
성동도로사업소	8	-	8 (신답, 동일로, 답십리, 중랑, 군자, 신내, 성동, 마장)
강서도로사업소	17	1 (기설치)	16 (공항, 등촌, 개화, 오금, 고척, 고척2, 오목, 구로, 여의, 국화앞, 가마산, 노들길, 구로역, 개봉, 외발산, 서부트럭(2개 집수정))
서울시설공단	14	5 (기설치)	9 (수서, 잠두봉, 마들, 수락, 광복, 가양, 상도, 장암, 도봉(3개 집수정))

11) 성산대교 성능개선 (사업별설명서 p.1271)

- 동 사업은 1980년에 건설되어 노후화된 2등급(DB-18) 성산대교를 1등급 교량(DB-24)으로 성능을 개선하여 시민 안전 확보와 내구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98억 58백만원 대비 70억원(71%)이 감소한 28억 58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표]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2,858,000	(x-) 9,858,000	(x-) △ 7,000,000
시설비	(x-) 1,500,000	(x-) 8,500,000	(x-) △ 7,000,000
감리비	(x-) 1,358,000	(x-) 1,358,000	(x-) 0

- 이는 본교 성능개선공사를 위한 가교가 하천점용허가 협의
난항으로 설치되지 못해 본교공사가 장기지연됨에 따라 가교
설치를 배제한 방안으로 설계를 변경하고자 연내 집행이 어
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비 36억 9백만원과 가교설치비 33
억 91백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 동 사업은 북단('20.3월)과 남단('21.3월) 공사를 완료하고 '21년
1월 본교공사를 착공하여 가설교량 설치를 위해 서울지방국
토관리청과 하천점용허가 협의¹³⁾를 진행했으나 국토관리청에
서 요구한 가교 세굴방지공의 추가공사비가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최대 180억원 추정)됨에 따라
- 서울시는 가교 설치 대신 기존 보도를 차도로 활용하여 당초
계획과 같이 상시 6차로를 확보하는 대안을 검토하고자 '교
통모니터링 및 교통소통대책 재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 설계심의 등의 사전절차를 재진행할
예정임.
- 하천점용허가 지연으로 가교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서울시는
2021년에 제2회 추경에서도 가교설치비 40억원을 감액한 바
있으며, 예산 집행에 있어 가교 설계비 2억 79백만원(총 설계비
25억 1백만원의 11.1%)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매몰될 상황이며,
- '교통모니터링 및 교통소통대책 재수립' 용역비 8억 14백만

13)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환경부고시 제2021-304호: 하천점용허가는 당초 국토교통부 소관 사무였으나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른 「정부조직법」이 개정(2020.12.31. 공포, 2022.1.1. 시행)됨에 따라 2022.1.1.부터 환경부 소관으로 개정되었음.

원이 추가로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설계로 인해 추가 사업비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설계과정에서 가교 없이도 공사가 가능함을 검토하지 못하여 결국 예산적 측면에서 낭비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임.

□ 교통모니터링 및 교통소통대책 재수립 용역

○ 교통모니터링 (2021.12.~2022.06.) - (주)선트래픽

: 월드컵대교, 서부간선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량 파악, 교통소통대책 1~3(안) 비용산정, 교통수요예측, 편익산정, 경제성분석, 재무적 타당성분석, 기술협의 등

○ 교통소통대책 재수립 용역 (2021.12.~2022.08.) - 동부엔지니어링(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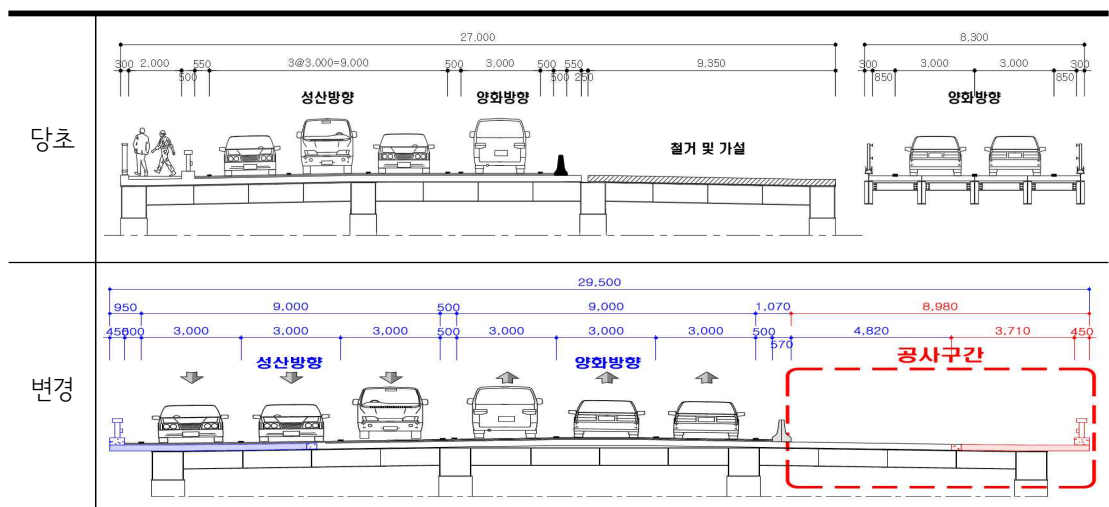
: 과업 범위: 교통소통대책 1~3(안) 기본 및 실시설계, 장단점, 경제성, 구조안전성 비교검토 후 최적(안) 도출, 설계VE, 설계안전성검토, 설계자문 및 심의 등

□ 성산대교 본교 성능개선공사 변경안

○ 현재 변경 검토중인 공사(안)

구 분	당 초(가교 설치)	변 경(가교 미설치)
차로운영	☐ 상시 6차로 확보 ☐ 가교 2차로+기존도로 4차로	☐ 상시 6차로 확보 ☐ 기존 보도 활용
교통전환	☐ 가교로 2차로 교통전환 후 2차로씩 바닥판철거 및 설치 공사시행	☐ 기존 도로내에서 교통전환 후 1,2차로씩 바닥판철거 및 설치 공사시행

○ 대표 횡단면도(안)



- 참고로, 성능개선 공사를 완료한 남단과 북단의 프리캐스트(PC) 바닥판 하부에서 종방향 균열이 발생하여 외부전문가 합동조사단의 구조안전성 검토가 실시되었으며 시 감사위원회에서 PC바닥판 시공법 변경 및 제작, 운반, 시공, 감리 등의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 서울시는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 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나 장기 사용성 확보를 위해 균열보수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으로 구조적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나 성능개선 공사가 끝난 지 1년밖에 안 된 곳에서 균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음.
- 균열발생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철저하게 보수·보강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본교공사 지연으로 인해 성산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장기화되고 있는 바,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12) 영등포역고가 보수공사 (사업별설명서 p.1276)

- 동 사업은 정밀안전점검용역 결과 영등포역고가에서 발견된 손상에 대하여 적기 보수로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17억 6천만원 대비 4억 5천만원(25.6%) 감소한 13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1,310,000	(x-) 1,760,000	(x-) △450,000
시설비	(x-) 1,310,000	(x-) 1,760,000	(x-) △450,000

- 이는 2020년 6월부터 시작된 영등포역고가 보수공사가 당해 연도 4월 준공됨에 따라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추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사 준공에 따른 제경비 정산 9천 9백만원, 이전비 등 정산 3억 1천만원, 건설일용근로자 미고용으로 미집행된 고용개선지원비 4천 1백만원임.
- 참고로, ‘고용개선지원비’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사회보장 강화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주휴수당과 2021.5월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보험 지원금과 고용개선장려금으로
-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는 서울시(건설혁신과)에서 배포한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에 따라 고용개선지원비를 산출하여 공사 원가에 반영토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처럼 공사원가 내 고용개선지원비 반영 대상 공사이나 건설일용근로자의 작업공정이 전년도에 완료되어 편성예산이 미집행되는 등 고용개선지원비 편성과 집행에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는바,

- 해당 사업들의 고용개선지원비 편성 및 집행 추이를 바탕으로 예산편성의 정확도를 높여 고용개선지원비 지급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고용개선지원비

- 고용개선지원비: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주휴수당 지급,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 고용개선장려금을 말함.

1. 유급휴일 보장 (주휴수당 지급)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주휴수당 지급조건(고용노동부)」: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

2.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지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지원은 내국인에 한정)

- 건설일용근로자 부담분 사회보험료('22년도: 국민연금4.5%, 건강보험3.495%)의 최대 80%를 지원
- 대상 : 만35세 미만('82년('88.1.1.이후 출생), '23년('89.1.1.이후 출생), 월 노무비총액 225만원 미만 (월 근로일수 8~12일:60%, 13일 이상 : 80% 지원)

3. 고용개선장려금 지급*

- 상시고용을 촉진한 사업자에게 인센티브(최대 50%)를 지급
- 내국인 고용 90%이상인 사업장에 한정

*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21.5.20.)
-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 적용대상 및 범위

구 분	적용 대상(공사)	적용 기관	적용시점
주휴수당	공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공사 포함)	서울시, 자치구 (시·구 산하 투자출연기관 포함)	'20.7.1.
사회보험료 (고용개선장려금)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공사 제외)	서울시,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구 산하 투자출연기관 제외)	'21.7.1.
적용제외	▶ 신 규 :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 ▶ 공사종 : '21.7.1.기준 공정률 70% 초과, 잔여 공사기간 3개월 미만은 시공사와 협의 후 시행		

○ 적용시점

1. 주휴수당 : '20. 7. 1. 이후 진행 중인 건설공사 또는 신규 발주하는 건설공사

- ※ '20. 6. 30. 이전 발생한 노무비는 소급 적용하지 않음
- ※ 진행 중인 공사의 경우, '20. 7. 1. 기준 공정률 70% 초과 또는 잔여 공사기간 3개월 미만은 시공사와 발주자가 협의 후 시행
- ※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단, 제외 대상이라도 시공사와 발주자 협의 후 매뉴얼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가능)

2. 사회보험료, 고용개선장려금 : '21. 7. 1. 이후 신규 발주 또는 진행 중인 건설공사

- ※ '21. 6. 30. 이전 발생한 노무비는 소급 적용하지 않음
- ※ 진행 중인 공사의 경우, '21. 7. 1. 기준 공정률 70% 초과 또는 잔여 공사기간 3개월 미만은 시공사와 발주자가 협의 후 시행
- ※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단, 제외 대상이라도 시공사와 발주자 협의 후 매뉴얼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가능)